

## 중간에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주영(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공인회계사  
(cpayoungi@empas.com)

심태섭(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tsshim@uos.ac.kr)

.....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향상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해 원천징수상황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최종 결정세액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자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에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중간에납상황(추가 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한 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간에납상황은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에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납세자의 선납상황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준거점이 중간에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에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기에,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과 달리 세무대리인들은 의사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전문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과도한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선납상황을 환급상황으로 만들 경우 조세순응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도입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결정 방식의 전환은 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 및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본 연구를 통해 중간에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책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간에납상황,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전문가, 프로스펙트 이론, 규제 이론

.....

최초투고일: 2015. 7. 20      수정일: (1차: 2015. 10. 2)      게재확정일: 2015. 12. 15

\* 본 논문은 한국회계학회 2015년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논문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1. 서론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국의 재정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조정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간예납세액이 조정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가정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는데,<sup>1)</sup>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 결정 정책 도입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상황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 변수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즉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은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과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최종 자산(final asset)으로 측정된 효용에 따라 의사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기대효용이론과 달리 준거점(reference point)로부터의 이득(gain) 또는 손실(loss)로 측정된 상황의존적인 가치함수에 따라 행동한다.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각자의 준거점에 따라 손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득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선납상황(prepayment position)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납세자의 조세채무가 선납세금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 즉 손실 상황(loss situation)으로 보고, 반대로 납세자의 선납세금이 조세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상황(refund position) 즉 이득 상황(gain situation)으로 보았다. 선행연구

1)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조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가 맞물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비화했다고 판단하고,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제도의 변경과 관련해 기존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모든 근로자들이 지난해 자신의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스스로 원천징수 금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 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보완해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2015.7.1.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구들은 대부분 납세자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chepanski and Kelsey(1990), White, Harrison, and Harrell(1993), Dusenbury(1994)와 Schmidt(2001)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과 같이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에 있는 납세자가 환급 상황(refund position)에 있는 납세자 보다 애매한 세무사례에 대하여 공격적 선택<sup>2)</sup>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과 같이 중간예납상황이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과연 납세자들의 중간예납상황이 의사결정의 준거점인지는 분명하지 않기에,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이 타당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규제이론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 당사자들(regulated parties)에게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Schmidt(2001)는 규제이론을 세무 상황에 적용하면서 공인회계사와 같이 규제된 대리인(이하 CPA)<sup>3)</sup>들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 하에서 규제되지 않은 대리인(이하 Non-CPA)들보다 오히려 납세자의 편에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yres, Jackson, and Hite(1989)는 차별적인 정부 규제를 받는 세무전문가 유형 간에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CPAs가 non-CPAs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Hite and McGill(1992)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의 유형에 따라 공격적인 조언 또는 보수적인 조언에 동의하는 경향이 차이가 나는지 실험한 결과, non-CPA인 상업적 기장 대리업체보다 CPA나 법률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경우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CPA가 세법을 보다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나 성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증가시켜 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Ayres et al., 1989, p.301). 즉 규제이론에 따르면 CPA와 같이 규제를 받는 집단은 세법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 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세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세무전문가는 본 연구의 관심사인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 크기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납부 상황에 있는지 또는 환급 상황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의사결정하기에, 납세자의 중간예납액의 크기는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중간예납상황이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sup>4)</sup> 그러므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근로자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원천징수 방식 도입과 근로자들 스스로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2) 애매한 세법규정 하에서 납세자 혹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을 “공격적(aggressive)”으로 표현한다.  
 3) 일정한 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을 가지고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국가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일정한 감독, 즉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CPA”라 통칭하였다. 이에 비하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상업적 기장대리업체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이들은 국가나 세무당국으로부터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러한 집단을 본 연구에서는 “Non-CPA”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가능하다.  
 4) 기존연구에 대한 것은 제II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세무전문가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간예납세액의 조정을 통한 통제 이외에 이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Roberts and Cargile, 1994; Newberry, Reckers, and Wyndelts, 1993; McGill, 1990; Kaplan, Reckers, West, and Boyd, 1988; 김훈·배수진·심태섭, 2010; 전중환·김노창, 2012)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Cloyd and Spilker, 1999; Duncan, LaRue and Reckers, 1989; LaRue and Reckers, 1989; 심태섭, 2004)을 모두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할 때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대상자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였고,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두 개의 처리변수(고객의 중간예납상황 및 세무조사 가능성)를 집단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s)으로 조작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하였고, 종속변수는 응답자를 가상기업의 세무대리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중간예납상황이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간예납금액이 의사결정자의 준거점으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준거점은 개인 또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도상호, 2011), 또한 준거점은 특정한 1개가 아니라, 전기이익, 재무분석가 예측치, 그리고 0 등 다양한 준거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Koonce and Mercer, 2005). 또한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연구하였기에,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즉 납세자에 비해 세무전문가가 갖고 있는 특성, 즉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능력,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제공 능력으로 인해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 크기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 실험대상 및 준거점과 관련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하여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순응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통해 조세순응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성실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도입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가능성이 유의하게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을 세무전문가의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들을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III장에서는 실험연구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연구의 가상적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서 논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본 장에서는 과연 “중간에납세액의 크기가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각 변수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근거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2.1 중간에납상황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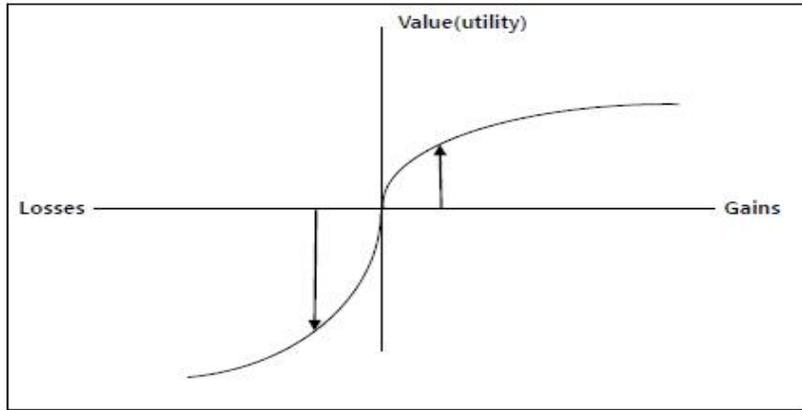
우선 중간에납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프로스펙트이론(prospect theory)과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에 의하여 그 영향을 예

측할 수 있다.

#### 2.1.1 프로스펙트이론 및 중간에납상황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프로스펙트 이론이란 Kahneman and Tversky (1979)가 개발한 이론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개인들이 최종 자산(final asset)으로 측정된 효용과 발생확률로 가중한 기대효용(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따라 의사결정 한다는 경제학의 이론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의심을 시작으로 최종 자산이 아닌 준거점(reference point)로부터의 이득(gain) 또는 손실(loss)로 측정된 상황의존적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와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sup>5)</sup>에 따라 개인들이 행동한다는 프로스펙트 이론이 개발되었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이익 구간에서는 오목(concave)한 형태를 보이며, 손실 구간에서는 볼록(convex)한 형태로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에는 변화에 민감하나,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특히 손실 구간의 기울기가 이익 구간보다 가파르므로 손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강하게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게 된다(손실 회피성-loss aversion)(Koonce and Mercer, 2005, p.180-181).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준거점에 따라 손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

5) 기대효용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산출물의 발생확률에 대해 적절히 평가한다고 가정하였으나,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그 외의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고 가정한다(Koonce and Mercer, 2005, p.181).



〈그림 1〉 프로스펙트 이론 상의 가치함수

로 행동하고, 이득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선납상황(prepayment position)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sup>6)</sup> 즉 납세자의 조세 채무와 애매한 세무 이슈를 고려하기 전 선납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 납세자의 조세 채무가 선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 즉 손실 상황(loss situation)으로 본다. 반대로 납세자의 선납세금이 조세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상황(refund position) 즉 이득 상황(gain situation)으로 본다.

Schepanski and Kelsey(1990)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사결정과 관련한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s)를 실험한 결과 loss

condition에서 보다 refund condition과 final asset conditions에서 더 위험회피적이었다. 이는 성과가 표현되는 방식이 납세자의 위험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White et al.(1993)은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사결정 시 선납 상황(prepayment position)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발율과 벌금액을 낮음, 중간 그리고 높음으로 조작한 결과, 적발율이 높은 경우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tax due position)의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하는 상황(tax refund position)의 납세자보다 공격적인 선택을 하였다. Dusenbury(1994)는 숙련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순응 의사결정에 대한 선납 상황(prepayment position)의 영향을 실험한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상황(refund case)

6)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실증적 납세 연구(Chang, 1984; Hite et al., 1988; Schadewald, 1989; Schepanski and Kelsey, 1990; Sawyers, 1990; White et al., 1993; Dusenbury, 1994)에서는 원천징수를 프로스펙트 이론의 프레임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적용하였다. 즉 과다 원천징수 당한 납세자는 이득 상황에 있고 과소 원천징수 당한 납세자는 손실 상황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이장섭 · 조인선, 2004, p.11). 프레임링 효과란 판단자가 문제를 대할 때,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손실과 이득을 구분하여 손실프레임(loss frame), 이득프레임(gain frame)으로 문제를 유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같은 사물을 사람마다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똑같은 사물을 달리 보는 것은 사람마다 심리적 판단 기준점(reference point)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차가 곧 그 사람의 프레임으로 굳어지고 그 후의 정보획득과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판단자에게 정보 제시 또는 판단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이러한 프레임링 효과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재관, 1995, p.311).

보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payment due case)에서 납세자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하였다. Schmidt (2001)는 미국 전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선납 상황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조연에 동의 하는 정도가 다른지 실험하였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에 있는 납세자가 환급 상황(refund position)에 있는 납세자 보다 공격적인 조연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결과도 예상과 일치하였다.

Schadewald(1989)는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거점(reference point)과 선납 상황(prepayment position)을 조작해 실험한 결과 공격적인 세무 신고와 관련한 피험자의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Webley, Robben, Elffers and Hessing (1991)은 2개 국가에서 선납 상황(prepayment position)을 조작해 학부생, 일반인, 그리고 학부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모두 예측한 방향으로 도출되었으나, 일부 실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스펙트 이론의 프레이밍 효과를 테스트하는 연구에서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에 따라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혼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에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에 따른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2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 당사자들(regulated parties)에게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규제이론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Stigler(1971)가 규제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연구하면서 발전시켰다. Stigler(1971)는 충분한 지배력을 갖는 산업은 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고, Peltzman (1976)이 Stigler의 모형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서 CPA는 규제를 받는 그룹(regulated group)에 속하고, 법적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세법을 보다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게 하는 CPA의 능력이나 성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CPA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증가시켜 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Ayres et al., 1989, p.301).

Schmidt(2001)는 규제이론을 세무 상황에 적용하면서 CPAs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 능력<sup>8)</sup>을 갖추고 있으므로 세법이 애매한 상황 하에서 Non-CPAs 보다 오히려 납세자의 편에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chmidt, 2001, p.161).<sup>9)</sup> CPAs를 규제된 세무대리인으로 규정하고, non-CPAs

7)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시나리오에 관련된 법률과 세무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할 것인가, 즉 법률과 세무환경에 대한 설명의 상세 정도가 있다. Schadewald(1989)와 Sawyers(1990)는 프로스펙트이론에 불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프로스펙트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의 연구들(Chang, 1984; Jackson and Jones, 1985; Chang et al., 1987; Schepanski and Kelsey, 1990; White et al., 1993; Dusenbury, 1994)은 모두 시나리오가 상세하지 않은 것들이었다(이장섭·조인선, 2004, p.12).

8) Cuccia(1994)는 CPAs가 non-CPAs 보다 고객 친화적인 태도로 세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크고, IRS의 가이드스 없이 세법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Cuccia(1995)는 세무대리인들의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행동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 연구에서 CPAs와 non-CPAs의 태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CPAs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 적극적인 조연을 하고, 고객들을 지지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미국에서는 세무신고 준비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CPAs, 변호사, 그리고 등록된 에이전트(Enrolled Agent)만이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를 상대로 고객을 대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Circular 230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를 규제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으로 보고 세무대리인 유형(preparer type)이 납세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CPAs로부터 공격적 조언을 받은 납세자가 non-CPAs로부터 공격적 조언을 받은 납세자보다 공격적 조언에 더 동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yres et al.(1989)는 차별적인 정부 규제를 받는 세무대리인 유형 간에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규제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에 따라 애매한 다섯 가지 세무 상황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받는 CPAs가 그렇지 못한 세무대리인들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조언하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CPAs는 non-CPAs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Ayres et al., 1989, p.300-301).

또한 Hite and McGill(1992)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공격적인 조언 또는 보수적인 조언을 받을 경우 그러한 조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하였다. 피험자들은 non-CPA인 상업적 기장 대리 업체보다 CPA나 법률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경우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Hite and McGill, 1992, p.395). 이러한 경향은 피험자들이 공격적인 조언을 받는 경우 뿐 아니라 보수적인 조언을 받는 경우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 규제이론에 따르면 CPAs와 같이 규제를 받는 집단<sup>10)</sup> 세법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세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을 갖는 세무전문가는 본 연구의 관심사인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납부 상황에 있는지 또는 환급 상황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의 크기는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예납상황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테스트한 연구들에서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환급 상황(refund position)인 경우보다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인 경우에 공격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로 가설을 설정하고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이론에 따르면 중간예납상황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고객의 선납상황(prepayment position, 중간예납세액의 크기)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Roberts(1998)는 세무조사 가능성과 벌금의 효과와 관련한 기존 논문을 검토한 결과 4편의 논문(Roberts and Cargile, 1994; Newberry et al., 1993; McGill, 1990; Kaplan et al., 1988)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10)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세무대리인으로 하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나머지 3편의 논문(Cloyd and Spilker, 1999; Duncan, LaRue and Reckers, 1989; LaRue and Reckers, 1989)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Newberry et al.(1993)은 두 가상적인 상황(신임 IRS 국장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강경하게 집행할 것으로 예정한 상황 vs. 기존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기대하는 상황)으로 설정한 실험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벌금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높음(high) vs. 낮음(low)으로 설정한 McGill(1990)과 Kaplan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과 조세절감액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합리적으로 가능(reasonably possible) vs. 희박(remote)으로 설정한 Roberts and Cargile(1994)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과 고객 상실 가능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가능성을 10% vs. 25%로 설정한 Duncan, LaRue and Reckers(1989)와 LaRue and Reckers(1989)의 연구와 5% 미만 vs. 50% 초과로 설정한 Cloyd and Spilker(1999)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세무전문가들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세무조사 가능성은 고객에 대한 세무보고 조언 의사결정 시 세무대리인이 고려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oberts, 1998).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로 심태섭(2004), 김훈 외(2010) 그리고 전중환·김노창(2012)이 있다. 먼저 심태섭(2004)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

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심태섭, 2004, p.297). 김훈 외(2010)에서는 세무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강화(세무조사 낮음 vs. 높음)와 가산세율의 증가(40% vs. 80%)가 세무대리 실무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세무조사 확대와 가산세율의 증가 모두 세무대리 실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성실신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훈 외, 2010, p.141-142). 전중환·김노창(2012)에서는 이전가격사전승인에 대한 자문계약의 보수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와 세무조사가능성(낮음 vs. 높음)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상의 사례를 이용하여 업무에 대한 사전경험이 있는 Big4와 대형법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인 경우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중환·김노창, 2012, p.131-132).

이와 같이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응, 즉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시

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세무전문가의 공격적 의사결정은 감소할 것이다.

## 2.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을 조정 가능한 외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실험과업을 조정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중간예납세액이 어느 정도 조정가능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sup>11)</sup> 그리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은 회사 내부에 경리담당부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올해 7월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본인의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되게 되면,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법 규정이 애매한 세무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한 이론적인 검토와 선행연구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실험연구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추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책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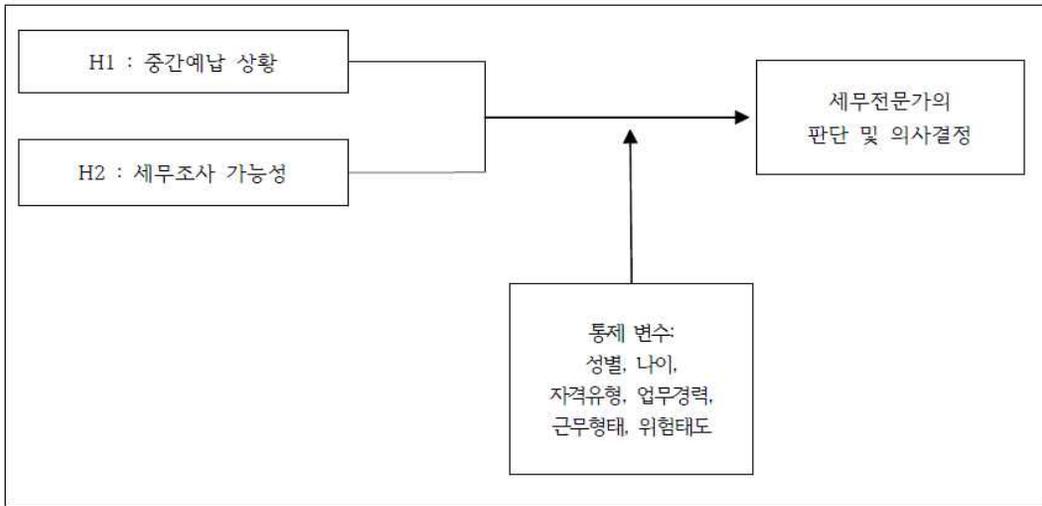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3.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의 중간예납상황(client prepayment position)과 세무조사 가능성(tax audit probability)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s: 고객의 중간예납상황 및 세무조사 가능성)가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Roberts(1998)<sup>12)</sup>가 제시한 회계 관

11)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근로소득간이세액 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2 또는 추계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전년도 실적기준의 1/2 또는 당해 중간 결산하여 납부 가능하다.

12) Roberts(1998)는 세무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개인 심리 요인(내적요인,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과 환경적 요인(외적요인, environmental factors)을 고려한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특정 업무에 대한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요인과 경제적(외적)요인을 강조한 경제 심리 프로세싱 모형(economic psychology processing model)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심리 요인(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은 인식(cognitive)과 감정(affective) 관련 요소들을 포함하며,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은 국제정, 고객, 회사와 관련한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림 2〉 연구 모형

런 의사결정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factors)에 해당한다. 즉 중간예납상황은 고객 특성(client characteristics)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가능성은 국세청 입장(IRS position)에 속한다. 두 가지 처리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별, 나이, 자격유형, 업무경력, 근무형태를 조사하고,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여 이들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 3.2 실험참여자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고객의 중간예납상황 및

세무조사 가능성)가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실험실 연구(laboratory experiment)가 가장 적합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한 현장실험방법(field experiment)<sup>13)</sup>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가상 상황 하에서 애매한 세무처리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응답자를 회계법인 세무본부, 세무법인과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상사례를 담은 설문지는 2015년 2월 한달 동안 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특성, 구체적으로 자격유형(회계사/세무사), 근무형태(개인회계사무소/회계법인(Big 4, Non Big 4)/세무법인/기타), 업무경력, 성별,

13) 실험방법은 전통적으로 실험참여자를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는나를 기준으로 “진실험방법(true experiment)”와 “준실험방법(quasi-experiment)”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류방법 이외에, 실험과업 등 실험환경이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느냐?(mundane realism)”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극히 단순하고 가상적인 상황으로 현실을 단순화한 실험을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라 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한 실험을 현장실험(field experiment)라 한다(Bryman, 1989, p.91,99).

나이와 위험선호태도는 분석 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 3.3 실험설계

#### 3.3.1 개요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두 개의 처리변수(고객의 중간예납상황 및 세무조사 가능성)를 집단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s)으로 조작하여, <표 1>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즉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2\*2, G1, G2, G3, G4)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조합의 가상 사례 중 각 응답자에게 단 하나의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 3.3.2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한 설문지는 다음 <표 2>와 같이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sup>14)</sup> 우선, <1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측정하는 단계로, 성별, 나이, 자격유형, 업무경력과 근무형태 등 응답자의 인

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는 본 실험절차로 실험참여자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의 세무대리인임을 가정한 후 의료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한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단계이다. 본 단계는 세부적으로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section 1]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처리가 제시된다. 이어 [section 2]에서는 고객인 개인사업자 A의 종합소득신고 관련 정보들과 함께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외의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납세자의 세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처리변수인 고객의 세무 상황과 관련해 실험집단 G1과 G2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고려 전 산출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추가납부상황(balance-due position)을 가정하고, 실험집단 G3와 G4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고려 전 산출세액보다 중간예납세액이 많은 환급상황(refund position)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section 3]에서는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세법 규정(소득세법 제33조)을 제시하면서 판단의 쟁점이 “A의 응급처치 및 수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임을 설명한다. [section 4]에서는 실험참여자인 세무대리인과 A의 관계와 고

<표 1> 실험 설계

중간예납 상황	세무조사 가능성	낮음	높음
	추가납부 상황		G1
환급 상황		G3	G4

14) 실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pilot test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가상적 세무 상황과 관련한 실험과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지문 상의 오류가 없는지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실험 상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표 2〉 실험 절차

〈1단계〉	실험참여자의 속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 측정
〈단계2〉	본 실험절차 [section 1] 종합소득신고 관련 가상의 세무 문제 제시 [section 2] 종합소득신고 관련 정보 제시 [section 3]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계상 관련 세법 규정 [section 4] 고객 및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추가 정보 제시 [section 5]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여부 의사결정
〈3단계〉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 및 위험선호태도 측정

객인 A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리변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G1과 G3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그리고 G2와 G4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ection 5]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가상적 세무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9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설문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실험질문에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manipulation check)를 위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 3.3.3 실험과업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 포함 여부에 대해 의사결정 하도록 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구체적

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A는 최근 2층 계단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실려 온 환자(4세)에 대해 시진, 문진, 뇌 CT촬영검사, X-ray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한 후 뇌자상, 우측 측두부·두정부 두개골 골절상, 경추 염좌상으로 진단하고 2-3일간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 후 수차례 구토를 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게 되자 보호자는 수차례에 걸쳐 증세를 설명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는 뇌 CT 검사상 뇌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부상 부위로 보아 더 이상 뇌출혈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증세가 악화되자 뇌 CT 촬영에 이어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기자극 요법 등을 실시하였지만 사망하였고, A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3억원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3.3.4 변수의 측정

3.3.4.1 처리변수: 고객의 중간예납상황 및 세무조사 가능성<sup>15)</sup>

본 연구의 처리변수는 고객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이다. 각 처리변수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조작하였다.

3.3.4.1.1 고객의 중간예납상황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은 손해배상금 고려 전 선납상황(prepayment position)이 “추가납부상황(balance-due position)”인 경우(G1과 G2)와 “환급상황(refund position)”인 경우(G3와 G4)로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추가납부상황”의 중간예납세액은 90,000천원으로, “환급상황”의 중간예납세액은 200,000천원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중간예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즉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전 과세표준이 5억 원이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외의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사

항을 반영한 결과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최종 산출세액은 187,660천원(지방소득세포함)이며,”라고 설정하였다.

이 상황에서 우선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이 “추가납부상황(balance-due position)”인 경우는 중간예납액이 90,000천원이기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을 경우 97,660천원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면 오히려 27,740천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6)</sup>

다음으로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이 “환급상황(refund position)”인 경우는 중간예납액이 200,000천원이기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을 경우 12,340천원을 환급 받고, 만일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면 환급금액이 늘어 137,740천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7)</sup>

3.3.4.1.2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조사 가능성은 낮은 경우(G1과 G3)와 높은 경우(G2와 G4)의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최근 전문직 종사

15)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대부분 소득 신고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들로 실험 과업에서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험 과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반면 세무조사 가능성은 납세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존 선행연구들과 같이 높고 낮음의 정도로 제시하였다.

16) 실제 실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 형태로 제시하였다.

〈표 3〉 추가납부 상황 (단위 : 천원)

	필요경비 불인정시	필요경비 인정시
과세표준	500,000	200,000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87,660	62,260
중간예납세액	90,000	90,000
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	97,660	(27,740)

17) 실제 실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 형태로 제시하였다.

〈표 4〉 환급 상황 (단위 : 천원)

	필요경비 불인정시	필요경비 인정시
과세표준	500,000	200,000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87,660	62,260
중간예납세액	200,000	200,000
환급세액	12,340	137,740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A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당해 연도 소득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최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A는 최근 6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로 제시하였다.

#### 3.3.4.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해당사례의 응답자들로 하여금 A의 세무대리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의사결정 하도록 하였다.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A에게 유리)”면 9점,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겠다(A에게 불리)”면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sup>18)</sup>

3.3.4.3 통제변수: 고객의 중요성 및 고객의 요구 처리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변수를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는 방법과 변수를 측정하여 분석 시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 3.3.4.3.1 변수를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여 통제: 고객의 요구와 고객의 중요성

우선 고객의 요구와 고객의 중요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일정수준으로 가정하여

(fixed variables) 이러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Roberts(1998)는 고객의 선호(요구)(client preference)와 고객의 중요성(client importance)이 세무대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의 경우 “A는 올해의 소득세가 1억 8천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로 모든 실험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제시하여 고객의 요구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고객의 중요성은 “A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장부기장 및 세무대리를 의뢰하고 있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수입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입니다”와 같이 모든 실험참여자에게 동일하게 기술하여 고객의 중요성을 통제하였다.

#### 3.3.4.3.2 변수를 측정 후 분석 시 통제:

성별, 연령, 자격유형, 업무경력, 사무소형태, 위험선호태도

각 참여자의 성별, 연령, 자격유형, 업무경력, 사무소형태와 위험선호태도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를 측정 후 결과 분석 시 통제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자격유형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분하였고, 사무소형태는 개인사무소, 회계법인(Big4와 Non Big4), 세무법인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서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는 Young(1985)의 방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귀하는 현재 복권을 한 장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은 당첨될 경우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실제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하시오.

이 없습니다(즉 0원). 이러한 복권의 가격이 5,000 원일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0%부터 100% 사이로 직접 기재)”로 질문한 후 통제하였다.

#### IV. 자료분석

##### 4.1 설문지 회수 및 응답자 현황

설문지는 개인회계사무소, 회계법인(Big 4와 Non Big 4), 세무법인과 그 외에 근무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총 359부를 배포하여 총 295부(회수율: 82.2%)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실험 질문에 대해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는 없었으며, 추가로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평가(manipulation check)에서 오답을 응답한 피험자의 설문지는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가상 사례에 응답한 세무대리인이 설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 두 번째 처리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 수준에 대하여 질문한 후 응답결과가 설문지

상의 세무조사가능성 수준과 불일치할 경우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205부(유효율: 69.49%)이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를 처리변수 수준별로 구분하면 <표 5>와 같고, 처리변수별(2\*2)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의 실험참여자는 남성(N=165, 80%)이 여성(N=40, 20%)에 비해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은 30세에서 39세까지의 응답자(N=127, 6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공인회계사(N=160, 78%)가 세무사(N=45, 22%)보다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회계법인(N=163, 79%)이 개인세무회계사무소(N=17, 8%)와 세무법인(N=17, 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경력은 5년 미만인 경우(N=111, 54%), 6-10년(N=50, 24%), 11-20년(N=35, 17%) 그리고 21년 이상인 경우(N=9, 4%)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41%가 위험중립적이었으며, 47%는 위험회피적이고, 나머지 12%는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실험 상황

중간예납 상황	세무조사 가능성	집단	응답자	적절성 평가*	유효수
추가납부 상황	낮음	G1	81	31	50
	높음	G2	70	18	52
환급 상황	낮음	G3	76	28	48
	높음	G4	68	13	55
계			295	90	205

\*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통해 오답을 응답한 모든 실험참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성별	남자	165	80 %	자격유형	공인회계사	160	78 %	
	여자	40	20 %		세무사	45	22 %	
	계	205	100 %		계	205	100 %	
나이	30세 미만	28	14 %	근무형태	개인회계사무소	17	8 %	
	30-39세	127	62 %		회계법인	Big 4	121	59 %
	40-49세	42	20 %			Non Big 4	42	20 %
	50세 이상	8	4 %		세무법인	17	8 %	
	계	205	100 %		기타	8	4 %	
업무경력	1-5년	111	54 %		위험태도	계	205	100 %
	6-10년	50	24 %	위험회피		97	47 %	
	11-20년	35	17 %	위험중립		84	41 %	
	21년 이상	9	4 %	위험선호		24	12 %	
	계	205	100 %	계		205	100 %	

#### 4.2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

본 절에서는 가설검정에 앞서 각 실험집단에서 실험참여자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을 제시한다.

우선, 〈표 7〉에서는 각 실험집단의 응답(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여부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통계

량을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집단별로 조작된 처리변수(고객의 선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관련 의사결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 (balance-due position, mean=5.637)에 환급

〈표 7〉 기술적 통계량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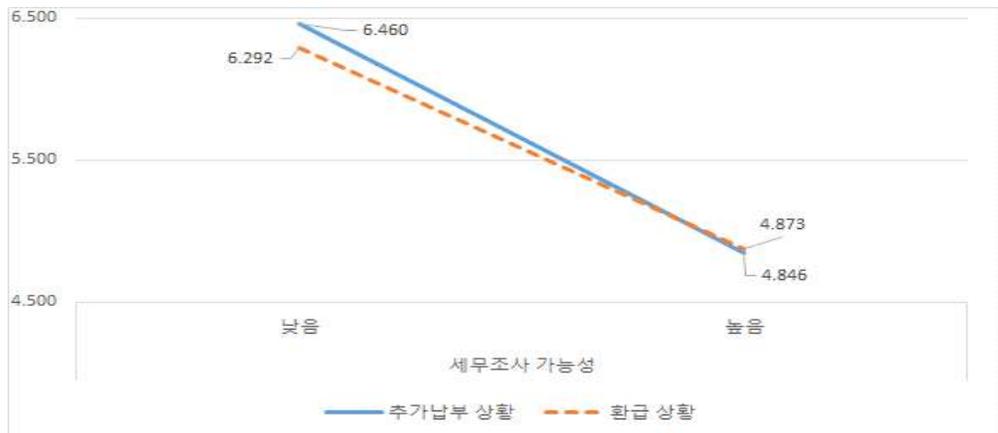
중간에납 상황	세무조사 가능성		
	낮음	높음	계
추가납부 상황	6.460 (2.435) n = 50	4.846 (2.539) n = 52	5.637 (2.605) n = 102
환급 상황	6.292 (1.989) n = 48	4.873 (2.611) n = 55	5.534 (2.437) n = 103
계	6.378 (2.218) n = 98	4.860 (2.564) n = 107	5.585 (2.516) n = 205

\* 실험참여자는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인지를 9점 척도를 이용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1은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겠다"(A에게 불리)이고, 9는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A에게 유리)이다.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mean=5.534)보다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분해 고객의 선납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 mean=6.460)와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mean=6.292)의 차이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격적 성향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 mean=4.846)와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mean=4.873)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환급 상황인 경우가 약간 높았다. 요약하면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가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보다 세무대리인들의 공격적 성향이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mean=6.378)에는 높은 경우(mean=4.860) 보다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가능성이 낮을 때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와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로 구분해 세무조사가능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에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mean=4.846) 보다 낮은 경우(mean=6.460)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선납상황이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mean=4.873), 낮은 경우(mean=6.292)).

〈그림 3〉은 〈표 7〉의 기술통계량 결과에서 제시한 집단별 응답성향의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



\* 그래프의 값은 집단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의사결정 평균값이고, 1은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겠다"(A에게 불리)이고, 9는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A에게 유리)이다.

〈그림 3〉 중간예납 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영향

다. 대체로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가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보다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이 차이는 더욱 감소하였다. 세무조사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보다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공격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3 가설검정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 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두 가지 처리변수와 처리변수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을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성별, 나이, 자격유형, 업무경험, 근무형태 및 위험선호태도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sup>20)</sup>에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이 환급 상황인 경우(refund position, mean=5.534) 보다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balance-due position, mean=5.637)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향, 즉 고객에게 유리한 공격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고자 하는 정도가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8>의 ANCOVA 결과에 따르면,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 value = 0.1, p = 0.752).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표 8> ANCOVA 결과<sup>19)</sup>

		F 값	Pr > F
처리변수	중간예납 상황(A)	0.1	0.752
	세무조사 가능성(B)	21.45***	<.0001
상호작용효과	A * B	0.09	0.766
통제변수	성별	9.1***	0.003
	나이	3.82*	0.052
	자격유형	0.86	0.356
	업무경력	5.07**	0.025
	근무형태	0.23	0.629
	위험태도	0.1	0.757
F 값	4.54***		
R-square	17.31%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19) 처리변수에 대한 확인 과정(manipulation check)에서 제외된 90개의 표본을 포함시켜서 총 29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가능성만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20) 본 연구의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각 처리변수의 주효과를 파악하였다.

의 첫 번째 가설인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세액의 크기)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기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준거점에 따라 손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득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선납상황(prepayment position)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즉 납세자의 조세 채무와 애매한 세무 이슈를 고려하기 전 선납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 납세자의 조세 채무가 선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 즉 손실 상황(loss situation)으로 보고, 반대로 납세자의 선납세금이 조세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상황(refund position) 즉 이득 상황(gain situation)으로 본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의 차이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과 달리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펙트 이론은 개인들이 각자의 준거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상호(2011)에 따르면 프로스펙트 이론 상의 준거점은 사전적(ex ante)일 수도 있고, 사후적(ex post)일 수도 있으며, 개인 또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도상호, 2011, p.142). 또한 Koonce and Mercer(2005)에 따르면 준거점은 특정한 1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이익, 재무분석가 예측치, 그리고 0 등 다양한 준거점이 이용된다(Koonce and Mercer, 2005, p.192). 이렇듯 개인 또는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준거점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준거점, 즉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세

무관련 의사결정의 준거점으로 사용하는 지는 분명치가 않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상황이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간예납금액이 의사결정자의 준거점으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본 연구의 응답자인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보다 총납부세액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준거점으로 하여 의사결정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은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이론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은 규제를 받는 집단으로 세법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애매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무전문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납부 상황에 있는지 또는 환급 상황에 있는지는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표 7>에서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납부 상황인 경우(mean=5.637)와 환급 상황인 경우(mean=5.534)의 의사결정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추가납부 상황인 경우(mean=6.460)와 환급 상황인 경우(mean=6.292)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두 경우 모두 중위수인 5를 초과해 고객 입장에서 공격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가능성과 관련해 <표 7>에서 세

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mean=4.86)보다 낮은 경우(mean=6.378)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향, 즉 고객에게 유리한 공격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고자 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8>의 ANCOVA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 value = 21.45, p = <.0001).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세무전문가의 공격적 의사결정은 감소할 것이다”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가능성을 세무전문가의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 상황)이 환급 상황에서 추가납부 상황으로 변함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관련 의사결정이 6.292점에서 6.464점으로 0.172점 증가하였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4.873점에서 4.846점으로 0.027점 감소하였으나, <표 8>의 상호작용효과 결과를 보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 value = 0.09, p = 0.766). 다음으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에 따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 7>에서 고객의 선납상황이 추가납부 상황인 경우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함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관련 의사결정이 4.846점에서 6.46점으로 1.614점 증가하였고, 고객의 선납상황이 환급 상황인 경우에는 4.873점에서 6.292점으로 1.419점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금액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고객의 선납상황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과 그 영향을 파악한 기존 연구 간의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우선, 도상호(2011)와 Koonce and Mercer(2005)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준거점이 가능하므로 납세자 혹은 세무대리인이 세무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준거점이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점의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납세자에 비해 세무전문가가 갖고 있는 특성, 즉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능력,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제공 능력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의 크기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 상황의 차이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중간예납금액이 조정 가능한 “사업소득자”에 대한 가상상황을 이용하여 실험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다. 이러한 실험 대상의 차이가 납세자를 상대

로 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 상황)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부 상황(balance-due position)인 경우에 공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공격적인 의사결정 성향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세무조사가능성을 세무전문가의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4 추가분석

본 연구에서 포함한 통제변수 중 업무경력과 위험태도는 행동과학연구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에서는 피험자들의 경력을 4단계로 나누어 ANCOVA를 적용하였고, 위험태도는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경력 및 위험태도의 영향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추가분석에서는 업무경력 및 위험태도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통제변수의 조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경험 여부에 따라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업무경력의 영향과 관련해 통합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을 업무경력을 기준으로 5년 이하와 나머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n=205), 구분분석에서는 업무경력 5년 초과인 표본(n=94)<sup>21)</sup>과 업무경력 5년 이하인 표본(n=111)<sup>22)</sup>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합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업무경력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처리변수 중 세무조사 가능성만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분분석에서도 처리변수 및 상호작용효과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조사 가능성만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피험자의 위험태도와 관련해 통합분석에서는 median(=50) 값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험회피집단과 상대적인 위험선호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n=205), 구분분석에서는 상대적인 위험회피집단 표본(n=97)<sup>23)</sup>과 상대적인 위험선호집단 표본(n=108)<sup>24)</sup>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합분석 결과는 위험태도가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유의도가 10% 수준에 근접하게 유의하였다(4.3에서는 p-value가 75.7%였으나, 4.4의 통합분석에서는 p-value가 13.6%임.). 통합분석과 구분분석 모두 처리변수 및 상호작용효과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조사 가능성만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구분분석에서 위험선호집단의 경우 중간예납상황이 약 1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21)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2, 6.818, 2.239), G2(25, 5.36, 2.43), G3(23, 6.739, 1.287), G4(24, 5.708, 2.422)

22)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8, 6.179, 2.583), G2(27, 4.37, 2.589), G3(25, 5.88, 2.421), G4(31, 4.226, 2.604)

23)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9, 6.31, 2.62), G2(19, 4.789, 2.898), G3(25, 6.92, 1.824), G4(24, 5.375, 2.841)

24)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1, 6.667, 2.198), G2(33, 4.879, 2.355), G3(23, 5.609, 1.971), G4(31, 4.484, 2.393)

Panel A : 업무경력 구분

〈표 9〉 ANCOVA 결과 : 업무경력 구분

		통합 분석 <sup>주1)</sup>		구분 분석 <sup>주2)</sup>			
				업무경력 5년 초과		업무경력 5년 이하	
		F 값	Pr > F	F 값	Pr > F	F 값	Pr > F
처리변수	중간예납 상황(A)	0.1	0.752	0.14	0.706	0.46	0.497
	세무조사 가능성(B)	21.5***	<.0001	7.66***	0.007	12.97***	0.001
상호작용효과	A * B	0.09	0.766	0.23	0.634	0.03	0.873
통제변수	성별	9.12***	0.003	2.88*	0.093	4.78**	0.031
	나이	3.83*	0.052	0.01	0.912	0.01	0.927
	자격유형	0.86	0.355	0.02	0.883	1.99	0.161
	업무경력	5.25**	0.023	-	-	-	-
	근무형태	0.58	0.447	0.00	0.989	0.61	0.436
	위험태도	0.01	0.954	0.37	0.547	0.23	0.633
표본 수		205		94		111	
F 값		4.59***		1.41		2.63***	
R-square		17.49%		11.74%		17.13%	

주1) 전체 표본을 업무경력을 기준으로 5년 이하와 5년 초과와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n=205).  
 주2) 업무경력 5년 초과인 표본(n=94)과 업무경력 5년 이하인 표본(n=111)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3)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B : 위험태도 구분

〈표 10〉 ANCOVA 결과 : 위험태도 구분

		통합 분석 <sup>주1)</sup>		구분 분석 <sup>주2)</sup>			
				위험회피 집단		위험선호 집단	
		F 값	Pr > F	F 값	Pr > F	F 값	Pr > F
처리변수	중간예납 상황(A)	0.1	0.751	0.84	0.363	2.07	0.154
	세무조사 가능성(B)	21.69***	<.0001	9.29***	0.003	11.24***	0.001
상호작용효과	A * B	0.09	0.765	0.00	0.981	0.59	0.446
통제변수	성별	9.2***	0.003	6.97***	0.009	3.59*	0.061
	나이	3.86*	0.051	2.67	0.106	0.88	0.350
	자격유형	0.87	0.353	1.39	0.242	0.71	0.402
	업무경력	5.13**	0.025	0.26	0.610	3.88*	0.052
	근무형태	0.24	0.628	2.08	0.153	0.80	0.374
	위험태도	2.24	0.136	-	-	-	-
표본 수		205		97		108	
F 값		4.82***		2.94***		2.97***	
R-square		18.21%		21.07%		19.34%	

주1) 위험태도의 median 값(=50)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험회피집단과 상대적인 위험선호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n=205).  
 주2) 위험태도의 median 값(=50)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험회피집단 표본(n=97)과 상대적인 위험선호집단 표본(n=108)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3)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C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경험에 따른 구분

〈표 11〉 ANCOVA 결과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경험에 따른 구분

		구분 분석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집단 <sup>주1)</sup>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은 집단 <sup>주1)</sup>	
		F 값	Pr > F	F 값	Pr > F
처리변수	중간예납 상황(A)	0.7	0.405	0.92	0.340
	세무조사 가능성(B)	7.12***	0.009	12.31***	0.001
상호작용효과	A * B	1.94	0.167	0.22	0.644
통계변수	성별	9.6***	0.003	2.72	0.102
	나이	1.73	0.192	0.67	0.415
	자격유형	0.76	0.386	0.45	0.502
	업무경력	7.39***	0.008	0.25	0.615
	근무형태	0.05	0.821	0.06	0.807
	위험태도	0.86	0.357	1.31	0.255
표본 수		84		121	
F 값		3.35***		2.1**	
R-square		28.96%		14.55%	

주1) Big 4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Big 4 이외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그리고 개인회계사무소 근무 세무대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주2)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것으로 나타나 위험태도가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경험여부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집단<sup>25)</sup>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은 집단<sup>26)</sup>으로 구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Big 4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Big 4 이외의 회계법인과 세무

법인, 그리고 개인회계사무소 근무 세무대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처리변수 및 상호작용효과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조사 가능성만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그 유의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기존 연구결과: 76.6%이었으나, 구분분석 결과: 16.7%임.).

25)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5, 6.64, 2.233), G2(17, 4.765, 2.437), G3(22, 6.545, 1.969), G4(20, 5.95, 2.438)

26) 4개의 집단 별 표본 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G1(25, 6.28, 2.654), G2(35, 4.886, 2.621), G3(26, 6.077, 2.018), G4(35, 4.257, 2.536)

업무경력과 위협태도,<sup>27)</sup>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경험여부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4.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 V. 결론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향상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 스스로 조정하게 할 경우, 이러한 정책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최종 결정세액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자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하였다.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은 프로스펙트 이론과 규제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준거점(reference point)로부터의 이득(gain) 또는 손실(loss)로 측정된 상황의존적인 가치함수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준거점에 따라 손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득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과 같이 중간예납상황이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과연 납세자들의 중간예납상황이 의사결정의 준거점인지는 분명하지 않기에, 프로스펙트 이론의 예측이 타당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 당사자들(regulated parties)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세무대리인은 규제를 받는 집단으로 세법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무전문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납부 상황에 있는지 또는 환급 상황에 있는지는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중간예납상황이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세

27) 업무경력과 위협태도를 동시에 조정한 결과도 기존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세무조사가능성만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이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만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방식이 개편될 경우 세무대리인 이용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이 납세자의 선납상황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존 연구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도상호(2011)와 Koonce and Mercer(2005)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준거점이 가능하므로 세무관련 의사결정의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준거점이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최종 세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중간예납금액이 조정 가능한 “개인 사업소득자”로 연구대상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

대리인으로 하였다. 이러한 실험 대상의 차이가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과 달리 세무대리인들은 의사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전문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도입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상 및 준거점과 관련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원천징수액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조정하게 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 도입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시 본 연구결과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대상자와 준거점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방법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실험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갖는다.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들을 일정한 시간 및 공간이라는 통제된 환경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완벽한 환경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통제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과 규제이론의 상반되는 예측에 따라 가설 및 실험 과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중간에 납세액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크기를 변동시켜 within-subject로 그 영향을 측정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훈·배수진·심태섭(2010), "세무조사의 강화와 가산세율의 증가가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19(1), 141-171.
- 도상호(2011), "행동과학 회계 연구모형의 비교분석," **세무회계연구**, 28, 137-149.
- 심태섭(2004),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3(1), 297-320.
- 이장섭·조인선(2004),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과 납세신고 의사결정," **세무학연구**, 21(1), 7-31.
- 이재관(1995), **의사결정과 경영과학**, 서울, 박영사.
- 전중환·김노창(2012),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1(3), 131-165.
- Ayres, F. L., B. R. Jackson, and P. S. Hite(1989),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ion: Evidence from Professional Tax Preparers," *The Accounting Review*, 64(2), 300-312.
- Bryman, A(1989), *Research Methods and Organization Studies*, Unwin Hyman Ltd, London UK.
- Chang, O. H(1984), "Tax Avoidance Behavior: A Prospect Theory Perspection," Pd.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Chng, O. H., D.R. Nichols, and J. J. Schults(1987), "Taxpayer Attitudes Toward Tax Audit Ris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299-309.
- Cloyd, C. B., and B. C. Spilker(1999), "The Influence of Client Preferences on Tax Professionals' Search for Judicial Precedents, Subsequent Judgments, and Recommendations," *The Accounting Review*, 74(3), 299-322.
- Cuccia, A. D(1994),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n Paid Tax Preparers: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1), 41-66.
- Cuccia, A. D.(1995), "Diversity in the Prpfessional Tax Preperation Industry and Potential Consequences for Regulation: Linking Attitudes and Behavior," *Advances in Taxation*, 7, 73-98.
- Duncan, W. A., D. W. LaRue, and P. M. J. Reckers (19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elected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on Decision Making by Tax Professionals," *Advances in Taxtion*, 2, 91-106.
- Dusenbury, R(1994), "The Effect of Prepayment Position on Individual Taxpayers' Preferences for Risky Tax-filing Op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16, 1-16.
- Hite, P., B. Jackson, and M. Spicer(1988), "The Effect of Framing Biases on Taxpayer Complia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Hite, P. A., and G. A. McGill(1992), "An Examination of Taxpayer Preference for Aggressive Tax

- Advice," *National Tax Journal*, 45, 389-403.
- Jackson, B. R., and S. M. Jones(1985),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6, 7-17.
- Kahneman, D., and A. Tversky(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plan, S., P. M. J. Reckers, S. West, and J. Boyd (1988), "An Examination of Tax Reporting Recommendations of Professional Tax Preparer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9 (4), 427-443.
- Koonce, L., and M. Mercer(2005), "Using Psychology Theories in Archival Financial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24, 175-214.
- LaRue, D., and P. M. J. Reckers(19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elected Factors on Professional Tax Preparers' Decision Process," *Advances in Accounting*, 7, 37-50.
- McGill, G. A(1990), "The CPA's Aggressive Position Recommendation Decision: Situational, Attitudinal, and Personality Facto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 Newberry, K. J., P. M. J. Reckers, and R. W. Wyndelts(1993), "An Examination of Tax Practitioner Decisions: The Role of Preparer Sanctions and Framing Effects Associated with Client Condi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2), 439-452.
- Peltzman, S(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211-240.
- Roberts, M. L., and B. R. Cargile(1994), "Impartiality Versus Advocacy: CPA's Responses to Conflict in Auditing and Tax Situati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labama.
- Roberts, M. L(1998), "Tax Accountants' Judgment. decision-making Research: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1), 78-121.
- Sawyers, R. B.(1990), "The Impact of Uncertainty and Ambiguity on Income Tax Decision Making," Ph.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 Schadewald, M. S(1989), "Reference Point Effects in Taxpayer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 68-84.
- Schepanski, A., and D. Kelsey(1990), "Testing for Framing Effects in Taxpayer Compliance Decis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 60-77.
- Schmidt, D. R(2001), "The Prospects of Taxpayer Agreement with Aggressive Tax Advi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157-172.
- Stigler, G(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
- Webley, P., H. S. J. Robben., H. Elffers, and D. J. Hessing(1991),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R. A., P. D. Harrison, and A. Harrell(1993), "The Impact of Income Tax withholding on Taxpayer Compliance: Further Empirical Evide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 63-78.
- Young, S. M(1985), "Participative Budgeting: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829-842.

## 〈부록〉 실험 설문지

### I. 실험집단 G1(중간에납상황: 추가납부상황, 세무조사가능성: 낮음)<sup>28)</sup>

다음의 가상적인 사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귀하가 실제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사례 I 은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례 II는 세무자문 등 업무시 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되는 상황은 모두 가상 상황이며, 귀하께서는 제시되는 내용만을 고려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Section 1〉 A와 관련된 세무 문제

귀하의 거래처인 A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A는 최근 2층 계단에서 아래 층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실려 온 환자(4세)에 대해 시진, 문진, 뇌 CT촬영검사, X-ray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한 후 뇌자상, 우측 측두부·두정부 두개골 골절상, 경추 염좌상으로 진단하고 2-3일간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 후 수차례 구토를 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게 되자 보호자는 수차례에 걸쳐 증세를 설명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는 뇌 CT 검사상 뇌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부상 부위로 보아 더 이상 뇌출혈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증세가 악화되자 뇌 CT 촬영에 이어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기자극 요법 등이 실시하였지만 사망하였고, A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Section 2〉 A의 종합소득신고 관련 정보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에 필요한 A의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서비스업(매출액은 15억 원이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전 과세표준: 5억 원

28) 부록에 첨부한 설문지는 실제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부분만을 첨부하였으며, G2 유형의 경우 〈Section 4〉의 (추가정보 2)에서 세무조사가능성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G1과 동일하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외의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최종 산출세액은 187,660천원(지방소득세포함)이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은 90,000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97,660천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면 27,740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 참조).

(단위 : 천원)

	필요경비 불인정시	필요경비 인정시
과세표준	500,000	200,000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87,660	62,260
중간예납세액	90,000	90,000
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	97,660	(27,740)

- 전기까지 누적된 결손금은 없고, 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됩니다.
- 이 외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 〈Section 3〉 관련 세법 규정

위의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의 쟁점은 “A의 응급처치 및 수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이고,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위의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시 예규 및 판례에서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국심86구143). 또한 기본통칙에서는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통칙 3-10-10…48).

〈Section 4〉 추가정보

(추가정보 1) 고객에 대한 기타 정보

위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A는 올해의 소득세가 1억 8천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장부기장 및 세무대리를 의뢰하고 있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수입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추가정보 2) 세무조사 가능성

최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A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Section 5〉 질문사항

귀하는 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14년도분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인지를 아래 숫자 ①~⑨ 중 하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①은 귀하가 위 금액을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겠다[A에게 불리]”이며, ⑨는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A에게 유리]”입니다.)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겠다. (A에게 불리) ←-----→ 확실히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 (A에게 유리)

①-----②-----③-----④-----⑤-----⑥-----⑦-----⑧-----⑨

II. 실험집단 G3(중간에납상환: 환급상황, 세무조사가능성: 낮음)<sup>29)</sup>

〈Section2〉 A의 종합소득신고 관련 정보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에 필요한 A의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서비스업(매출액은 15억 원이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 전 과세표준: 5억 원

29) G1 설문지와 다른 내용만을 제시하였으며, G4 유형의 경우 〈Section 4〉의 (추가정보 2)에서 세무조사가능성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G3과 동일하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외의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최종 산출세액은 187,660천원(지방소득세포함)이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은 200,000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2,340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아래 표 참조).

(단위 : 천원)

	필요경비 불인정시	필요경비 인정시
과세표준	500,000	200,000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87,660	62,260
중간예납세액	200,000	200,000
환급세액	12,340	137,740

- 전기까지 누적된 결손금은 없고, 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됩니다.
- 이 이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 〈Section 4〉 추가정보

##### (추가정보 2) 세무조사 가능성

최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A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The Effects of Prepayment Position and Tax Audit Probability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of Tax Professionals

Ju-Young Park\* · Tae-Sup Shim\*\*

## Abstract

As the financial condi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sharply worsened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about the welfare and international depression, it became important to ensure that public finances corresponding to this. The interest about the plan that can improve the tax compliance of the taxpayer such as leg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with the solution about this matter is rising. The various uncertainties can exist due to the ambiguity of the Tax law and complexity in order to fulfill the liability to pay taxes. This uncertainty can have an effect on the good-faith filing of the taxpayer.

This study has estimated the effect of the withholding tax adjustment on the taxpayers' tax compliance. The tax professionals were selected for test subjects, for most of tax determinations for individual businesses are made by them. And since the tax audit probability by taxation authorities affects the decision-making for taxation, the tax audit probability has been added as a treatment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what effect the interim prepayment by taxpayers and the tax audit probability by taxation authorities have on tax professionals' decision-making.

The reviews of Prospect Theory and Regulation Theory enable the anticipation of what effect the amount of interim prepaid tax amount has on the final tax determination. The former argues that individuals act based on the situation-dependent value function measured as gain or loss from the reference point. Concretely speaking, in an uncertain situation, they show aggressiveness in a loss-situation and conservativeness in a gain-situation based on each reference

---

\* Ph.D. in Taxation,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point. Most of studies employing Prospect Theory applied taxpayers' prepayment position for analyses with the subjects of taxpayers or students. That is, as seen at the anticipation by Prospect Theory,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for the interim prepayment position to have some effects on the final tax decision-making. However, since it is not clear if the situation of taxpayers' interim prepayment may be the reference point for decision-making, the anticipation of Prospect Theory may not hold any validity.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Regulation Theory, regulations bring regulated parties some benefit and since the tax professionals, who are regulated groups, have the capability to interpret tax law as the benefit to taxpayers and offer services with diverse scopes as well as negotiate with taxation authorities, they show an aggressive tendency in an ambiguous situation. Due to these traits of tax professionals,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making by tax professionals may not be affected by whether taxpayers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make additional payment or they are supposed to be refunded based on the amount of interim prepayment. Like this, there co-exist two possibilities that the interim prepayment position may have some effect on the final tax determination based on Prospect Theory or not on the ground of Regulation Theory.

With experimental method, tax professionals working at accounting firms, tax corporations and private accounting offices were asked to make decisions in virtual taxation situations related to the appropriation of the necessary expenses for damages. For hypothesis testing, the interim prepayment position(balance-due position vs. refund position) and the tax audit probability(low vs. high) have been divided into two levels to be designed as the total of 4 group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while at the decision-making for appropriating necessary expenses for damages both the customers' prepayment position and the tax audit probability were influenced as anticipated, only the tax audit prob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private business income earners" whose interim prepayment amount can be adjusted and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tax professionals. The difference of test subjects may result in the conclu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preceding researches with taxpayers as the subjects. Moreover, the conclusion is likely to be drawn that since from the taxpayers' position it may be unclear if the reference point at Prospect Theory is any prepayment position and again because from the tax professionals' total tax payment can b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im prepayment amount, the interim prepaid tax amount has no effect on the decision-making by tax professionals. However, since the conclusion has been drawn that unlike in taxpayers' prepayment position the tax professionals consider any tax audit

probability when they make any decision, it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measure controlling tax professionals.

These study results indicate there may exist the possibility that when taxpayers' prepayment position is turned to the refund position, the anticipation for tax compliance to be improved may be wrong even if the difference among test subjects and reference points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is stud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Prospect Theory suggest the results different from those of most other researches, it is necessary to be complemented through additional researches with various test subjects and reference points considered for its generalization. In addition, since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with experimental methods, it can't help having the limitations. Even though the tax professionals should have been tested in the controlled environments of certain time and space for higher internal validity, the realistic restraints made it inevitable to carry out the tests with questionnaires. Consequently, the perfect control of environments was not possible. Furthermore, besides the control variables employed at this study, those factors which may affect on the judgment and decision-making of tax professionals might have been omitted. Therefore, there will take care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Prepayment Position, Tax Audit Probability, Tax Professionals, Prospect Theory, Regulation Theory

- 
- 저자 박주영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 2월에 동 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세회피, 조세전략, 이익의 질, 기업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등이다.
  - 저자 심태섭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세무회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세무회계 및 회계감사분야에서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